

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 심 사 보 고 서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 심 사 보 고 서

2014. 6. 20.(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위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 부동산분) 및 취득세(자동차 등 대체취득시)면제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도세 감면안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 탑승인원 476명 중 29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슬픔과 전반적인 성찰을 불러오게 한 사건으로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도세 감면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의안 번호	665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정기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및 취득세(자동차 등 대체취득시) 면제

## 3. 의안전문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5. 비용추계서 : 붙임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1. 감면대상자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2. 세목별 감면내역

#### 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한다.

#### 나. 취득세

- 세월호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3. 기타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역자원세 특정부동산분 및 취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관 련 법 령(발체)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생략)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6
2,600만원 초과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8

3,900만원 이하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세 감면을 추진함

## 2. 비용 발생 요인

- 감면대상 :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
  -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감면세목
  - 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면제
    -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정기분
  - 나. 취득세 면제
    - 세월호에 선적된 희생자 소유의 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된 경우 그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할 경우

## 3.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2013년 재산세 부과자료 기준
  - 취득세 : 대체취득시 감면하므로 추계곤란
- 나. 추계 결과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감면액 : 65천원 정도
  - ※ 타 지역 거주자이나 도내에 과세물건을 소유한 경우도 감면
- 다. 재원조달방안 : 별도 재원조달 불필요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생략

## 6. 작성자 : 안전행정국 세정과장 이 정 호